

고흥군의회 공고 제2024- ㄱ/호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일

고 흥 군 의 회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에 따른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에 조례의 개폐나 이행을 권고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입법대상의 평가, 기준 및 실시계획(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입법평가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안 제7조 ~ 안 제12조)

마. 용역(안 제13조)

바. 입법평가의 결과공표 및 반영(안 제14조, 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11.(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고흥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조직의 설치·운영, 회계·예산 등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의장은 고흥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제5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4. 인권 · 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6.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흥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의원
2. 기획실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흥군의회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고흥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고흥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4조(입법평가 반영) 고흥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1조(수당과 여비)
- 안 제13조(용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비 수반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 성 자	고흥군의회의원 류제동
연 락 처	061-830-6060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성명(단체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